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1종)			
(신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파. 개인정보공개 에 관한 사항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1건1회 1건 1매당	100원 100원 100원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충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 11.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10. 1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 10. 13.

다. 상정일자 : 제3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5. 11.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호적법시행규칙(1995. 6. 5. 대법원규칙 제1369호)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증전 호적과태료 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별로 부과도록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던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해태기간

· 학력 · 생활정도 ·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던 것이 1995년 6월 5일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별로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 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자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배치되었던 종전규정을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95년 6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등이 근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현재까지 적용된 과태료부과기준은 개정된 내용대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요지(채재선 위원) : 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면제규정 제4조3항에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는 데, 담당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과태료부과를 면제해 줄 소지는 없는가?

○답변요지(문업승 시민봉사실장) : 현재까지 구청장이 면제해 준 실적은 없고, 이 조항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구청장이 면제해 주는 규정임.

○질문요지(정만직 위원) : 호적법시행규칙이

'95. 6. 5 기개정되었음에도 뒤 늦게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 답변요지(문엽승 시민봉사실장): 입법예고 기간등의 기일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소 조례개정 제안이 늦은 감을 인정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의안	33
번호	

제출년월일: 1995. 10. 10.

제출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호적법 시행규칙(1995. 6. 5. 대법원 규칙 제1369호)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등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종전 호적과태료 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등을 참작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별로 부과토록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을 삭제.

3. 개정근거

○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
제15조

4. 조례(안): 별첨

5. 예산 조치 필요성 여부: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증 “별표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과면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5조증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6조증 “해태 이유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7조증 “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를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로 한다.

제10조의 조재목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결정 자료부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		① 위반조항	② 과태료액	③ 해태기간				비고
주 소	성 명			1월미만 3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90mm × 268mm

(인쇄용지(2급) 60g/m²)

○ 작성요령

① 위반조항은 호적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와 별표1의 근거법령안 해당조문을 기입

② 과태료 금액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6조제6항에 의한 금액기입

③ 해태기간은 해당란에 ○ 표기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1. 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10. 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 10. 24.
다. 상정일자 : 제3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5. 11.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제1동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조례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아현 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아현동 96-2에서 아현동 417-7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2일 아현제1동사무소가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유지 : 없음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10. 23.
의안 35 제출자 : 마포구청장
번호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제1동사무소 청
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조례 별표1에 규정
되어있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 개정 주요골자
 - 아현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아현동 96
-2에서 아현동 417-7로 변경
(안 제4조관련 별표1)
 - 개정 근거
 -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
제6조 및 제15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예산조차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아현제1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의
“아현동 96-2”를 “아현동 417-7”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